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2월 25일
-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던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로 개정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추가(안 제3조)
 -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추가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
 -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조문 신설(안 제10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제3조)
 - 도 자활기금 및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각 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으로 관련 조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가. 개정 동기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위원수 확대운영(20명 이하 → 30명 이하)

- 이 조례안이 지난 2005년 8월 제정된 이후 복지분야 수요를 비롯한 각종 복지단체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행 적용조례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적용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 ‘충청북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적용을 받음
- 위원회 운영 대행
 - 자활기금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위원회는 ‘충청북도 생활보장위

원회'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대행 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

- 현행,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12명 구성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3월 25일로 임기가 만료 됨.
-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는 위원의 잔여임기와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2010년말 현재 93개위원회) 중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등 유사성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도의회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의원발의 하면서, 일부 조문의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